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8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개요	1
-------------	---

[양부남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4
----------------	---

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4
2. 의용소방대원 활동 공간 제공 근거 마련	12

I. 개 요

【양부남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 (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

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도지사도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II.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개정안들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양부남의원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춘생의원안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양부남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정년) ----- ----- ----- .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정년) ----- -----70 세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음(제5조).

또한,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¹⁾²⁾.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임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 보조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68개대 94,717명
(2024.1.1. 기준)

구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³⁾ ·전문 ⁴⁾ ·전담 ⁵⁾
대수(대)	3,968	1,417	1,305	142	1,104
현원(명)	94,717	36,501	31,249	3,733	23,234

○ 2023년도 활동성과 : 256,743회 1,213,627명 활약

구분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56,743	6,911	1,981	5,747	86,555	20,117	65,405	70,027
인원 (명)	1,213,627	63,962	8,197	19,901	407,312	86,746	262,162	365,347

3) 의용소방대의 하위 조직으로 동네별로 있는 119안전센터와 같은 개념임.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2015년 12.8% → 2024년 11월 19.9%→ 2029년(추정) 24.4%), 의용소방대가 주로 활동하는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한편,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연령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총인원이 줄어 들고 있는데 비해(2020년 96,561명 → 2024년 92,484명, 4.2% 감소) 61세 이상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2020년 7,114명 → 2024년 11,319명, 59.1% 증가).

<65세이상 인구 구성비 현황(2015~2024년)>

(단위: 명, %)

총인구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6,541,168	6,757,083	7,066,060	7,366,085	7,688,994
구성비(%)	12.8	13.2	13.8	14.3	14.9
총인구	2020	2021	2022	2023	2024.11월
65세 이상	8,151,867	8,571,347	9,018,412	9,499,933	10,199,204
구성비(%)	15.7	16.6	17.5	18.4	19.9

(자료: 소방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5)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6) 2023년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농가 52.6%, 임가 5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이 1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남(출처: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65세이상 인구 구성비 현황(2025~2029년까지 예상치)>

(단위: 명, %)

총 인구	2025	2026	2027	2028	2029
65세 이상	10,514,000	11,125,000	11,597,000	12,125,000	12,521,000
구성비(%)	20.3	21.6	22.5	23.6	24.4

(자료: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연령별 구성 현황 : 61세 이상 대원 통계>

(단위: 명, %)

구 분	총 인원	61세이상 인원	구성비(%)
2020	96,561	7,114	7.4
2021	95,645	8,785	9.2
2022	95,208	10,243	10.8
2023	94,717	10,831	11.4
2024	92,484	11,319	12.2

(자료: 소방청)

또한,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넘으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대 환경에 맞지 않는 바 이제는 농어촌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⁷⁾.

7) 제안이유 참조

개정안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노령 인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여부, 정년 연장 요건, 정년 연장 형식은 의용소방대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각 지방자치단체 별 지리적 특성·인구 구조·소방관서의 입지, 정년 연장 요건의 적절성 및 적시성 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146호)’이 계류 중이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의용소방대 정년연장 관련 개정안 내용 비교>

구분	정점식의원안(6146)	양부남의원안(7948)	정춘생의원안(9856)
법안 내용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가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규정

구분	정점식의원안(6146)	양부남의원안(7948)	정춘생의원안(9856)
연장 요건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도 자율 판단)	-
정년	-65세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70세	-65세 -단, 시·도 조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70세
연장 형식	대통령령에서 규정	시·도 조례로 규정	법률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현행법의 정년 65세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4.7.29) 당시의 기준이고, 현재는 의용소방대원 중 60세 이상인 대원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임무 수행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고령의 인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상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자원봉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지역

내의 많은 봉사단체⁸⁾를 통해 지역 안전에 대한 활동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입장임.

대전광역시 대전소방본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대전소방본부 및 대전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찬성한다고 밝히며, 다만, 정년 연장은 최대 5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예를 들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 중임.

- 근거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5(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구성 현황(2024.1.1. 기준)
 - 지역자율방재단 : 228개 시·군·구, 69,260명
 -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 17개(시·군·구 단장·부단장으로 구성)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1개(시·도연합회 회장·부회장 등으로 구성, 총53명)
- 활동실적('23년) : 총 36,111회 / 누적인원 308,814명
(자료: 행정안전부)

2. 의용소방대원 활동 공간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 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법⁹⁾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 또한,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2025년도의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집편성액은 813억 600만원이고, 이 중 소집수당이 43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53.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운영비 91억 5,000만원(전체 예산의 11.3%), 피복비 84억 700만원(전체 예산의 10.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예산 내역	예산액	비중
계	813.06	100.0
소집수당	438.17	53.9
운영비	91.5	11.3
피복비	84.07	10.3
장학금	64.67	8.0
경연대회	38.09	4.7
출장비	29.78	3.7
장비지원	22.68	2.8
국내연수	21.66	2.7
위탁교육	12.18	1.5
국외연수	7.76	1.0
재해보상비	1.54	0.2
보상보험	0.96	0.1

(자료: 소방청)

한편,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979개의 의용소방대 중 80.5%인 3,205개의 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사용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유 현황>

(단위: 대수, %)

의용소방대	보유 ¹⁰⁾	미보유	비고
3,979 (100.0)	3,205 (80.5)	774 (19.5)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으로(제7조¹¹⁾) 의용소방대 임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다는 점, 의용소방대의 연간 출동 횟수가 25만건이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련 장비의 보관 및 원활한 출동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10)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유 방식>

본서(센터)내	컨테이너	자체운영*	공공기관 무상대여	기타
1,901	242	242	718	115

* 자체운영: 마을회관, 시장상가변영회, 관리사무실, 가건물 등
(자료: 소방청)

11) 제7조의 내용은 각주 1) 참조

같이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의 지원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14조에는 이미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제1항), 국가 역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경비 지원과 별도로 사무공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지 여부는 자율방재단 등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와의 형평성¹²⁾,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¹³⁾ 및 지방자치단체¹⁴⁾ 등의 의견을 들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그 밖에, 개정안의 취지는 “사무 공간” 등 공유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것인데,

국·공유재산 특례의 기본적인 규정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000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

12)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임.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3호)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7호)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9호)

13) 행정안전부는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14) 현재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3,205개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관서 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59.3%(1,901대소)로 나타났다.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000을 00하게 할 수 있다”로 법문을 표현한다¹⁵⁾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1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487면.

※ 참고 입법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6. 12. 2.,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참 고

2024년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 세부 내역

※ 자료: 소방청

구분	합계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	재해보상	보상보험
	813.06	438.17	64.67	84.07	1.54	0.96
서울	34.49	20.67	2.82	1.97	0	0
부산	33.92	23.95	1.85	5.91	0.07	0
대구	10.46	4.98	2.39	2.46	0.04	0
인천	40.62	20.15	4.57	3.89	0.03	0
광주	9.56	3.28	1.08	1.3	0.01	0
대전	10.81	4.99	1.08	1.95	0	0.17
울산	22.23	11.42	1.84	3.71	0.15	0.18
세종	7.6	4.43	0.82	0.66	0	0.02
경기	105.83	39.84	4.72	8.7	0.25	0
강원	50.85	14.16	7.4	3.59	0	0.21
충북	52.91	26.1	3.84	4.81	0.1	0.07
충남	102.83	68.95	5.31	7.64	0.01	0.23
전북	53.47	40.16	3.69	6.17	0.03	0
전남	73.19	35.17	10.28	6.31	0.33	0
경북	119.25	68.14	9.93	16.65	0.1	0.07
경남	58.78	35.56	2.55	5.33	0.1	0
제주	17.57	11.4	0	1.99	0.05	0
창원	8.69	4.82	0.5	1.03	0.27	0.01

구분	장비지원	위탁교육	국내연수	국외연수	경연대회	출장비	운영비
	22.68	12.18	21.66	7.76	38.09	29.78	91.5
서울	0	0.6	1.6	0	1.78	1.77	3.28
부산	0	0	0	0.3	0	0.01	1.83
대구	0	0	0	0	0.12	0.07	0.4
인천	1.38	0.4	0.3	1	0.46	3.53	4.91
광주	0	1.13	0.33	0.14	0.54	0.27	1.48
대전	0	0.12	0	0.3	0	0.76	1.44
울산	0.5	0.32	0.28	0	0.36	2.21	1.26
세종	0	0.13	0.23	0	0.32	0.5	0.49
경기	1.81	2.13	13.14	2.27	6.34	10.23	16.4
강원	8.43	0.1	0	0	2.42	7.87	6.67
충북	2.77	0.31	0.6	1.34	3.98	0	8.99
충남	3.74	0.56	1.04	0.7	3.78	0	10.87
전북	0	0.24	0.3	0	1.15	0.24	1.49
전남	2.28	0.37	0.81	1.38	5.82	2.18	8.26
경북	1.17	5.31	1.66	0	5.81	0	10.41
경남	0.39	0	0.9	0.09	4.73	0.14	8.99
제주	0.2	0.46	0.47	0.24	0.23	0	2.53
창원	0.01	0	0	0	0.25	0	1.8